

<별지 제6호 서식>

국고대리점 폐지·변경 신고서

(☎ -)

문서번호 :

수 신 : 한국은행 총재

20

참 조 : 금융업무실장

기관장 (인)

「국고금 취급절차」 제4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고대리점의 (폐지, 명칭·주소·결제모점·통할점 변경)내용을 신고합니다.

국고대리점 구분	변경 대상	변경 전	변경 후 ¹⁾	변경예정 일자	폐지 사유 ²⁾
	명칭	(코드:)	(코드:)		
	주소	우편번호:	우편번호:		
	결제모점	(코드:)	(코드:)		
	통할점	(코드:)	(코드:)		
	명칭	(코드:)	(코드:)		
	주소	우편번호:	우편번호:		
	결제모점	(코드:)	(코드:)		
	통할점	(코드:)	(코드:)		

주 : 1) 폐지의 경우 변경후 명칭에 업무인수점을 기재

2) 폐지사유는 폐지시에만 기재

3) 코드는 금융결제원의 금융회사 코드(금융기관 공동코드) 기재

※ 제출기한 : 폐지 또는 명칭·주소 변경의 경우 변경 예정일의 3일 전, 결제모점 또는 통할점 변경의 경우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